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93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제220719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5조제1항 등)	2

I.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제220719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 2.

다. 회 부 일 : 2025. 1.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제정되었음.

녹색건축(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 등)의 확산을 통한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감축시나리오 구축 등이 필수적이며, 정책 수립 이후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현장기반의 세부 시행계획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 현장의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35조제1항 등).

3. 검토의견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5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u>업무</u>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u>시·도지사</u>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 ----- <u>권한</u> <u>은</u> ----- ----- <u>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u> <u>지사</u>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u>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제6조의2제1항 각 호----- <u>위하</u> <u>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 시·도지사 외에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은 국토교통부 본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각 권역의 국토분야 현장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제정되었음.

녹색건축물¹⁾ 확산을 통한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정책수립 등이 필수적이고, 정책 수립 이후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²⁾을 반영한 현장기반의 세부시행계획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 중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은 각 권역의 국토분야 현장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그 간의 업무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생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2) 지역의 기후 및 온·습도, 연중 일사정도, 건축물의 용도별 분포비율, 노후건축물의 분포 비율, 지역개발계획 등

수행을 통해 구축된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 현장의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확산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현장기반의 세부시행계획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임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을 확대³⁾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건축행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4. 12.)이 수립·고시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5

3) (녹색건축센터, 5개소) 한국에너지공단(울산), 국토안전관리원(진주), 한국부동산원(대구), 건설기술연구원(일산), 건축공간연구원(세종)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2개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 녹색건축센터 개요

- 『녹색건축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건축센터 지정
 - (주요업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녹색건축·에너지 효율등급·제로에너지 인증, 녹색건축물 축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 기관 지정현황

기 관	주 요 업 무
• 한국부동산원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 인증·평가 수행(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
• 국토안전관리원	-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성능개선 - 인증·평가 수행(녹색건축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
• 한국에너지공단	- 인증제도 운영(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제도 운영 / 건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제도 운영(녹색건축 인증), 인증기관 관리·교육 - 인증전문가 교육, 녹색건축 관련 연구 수행
• 건축공간연구원	- 녹색건축 관련 연구 수행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개요

- 『녹색건축법』 제29조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전문 공공기관을 창조센터로 지정
 - (주요업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GR기술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등을 수행
- 기관 지정현황

기 관	주 요 업 무
• 국토안전관리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 지원 - 그린리모델링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등
• 한국부동산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 - 그린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데이터 관리 등